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2550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9,2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1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2. 10.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 3.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이율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D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는 2018. 10. 26. 주식회사 A에 위 나.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A는 2020.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0. 19. 인천지방법원 2020개회654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소를 수계하여 2022. 7. 14.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분의 1 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재산이므로 원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05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원고는 2009. 8. 17.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인 부천시 소사구 F 일대를 사업시행예정지구로 하는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로 재임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지분을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의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인 원고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약정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기존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동

